

## 지식재산(IP) 분야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선정 공고

정부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에서는 지식재산(IP) 분야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13일  
지식재산처장

### 1. 사업목적

-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 금융·비금융 지원

### 2. 선정대상

-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5개

\* [별첨1]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정) 품목 리스트,  
[별첨2]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정) 품목 설명서

\*\* 기업 규모는 공고마감 기간까지 ‘한국평가데이터(주) 기업정보DB(CRETOP)’ 등록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3. 지원혜택

- (공통)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확인증(지식재산처장) 발급
- (금융지원) 혁신 프리미어 기업 전용상품을 신설하여 현재 정책 금융기관의 상품 중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 지원

**< (예시)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금융지원 관련 혜택 >**

기 관	혜 택
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상품 사용시 금리 최대 △1.0%p(원화 기준) 감면</li> <li>•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우대</li> <li>•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 부여</li> </ul>
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최대 △1.0%p 감면</li> <li>• 보증료를 최대 △0.3%p 감면</li> <li>• 수출자금의 경우 수출실적의 100% 이내로 한도 확대 (vs. 50~90%)</li> </ul>
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최대 △1.5%p 감면</li> <li>•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로 한도 확대 (vs. 80%)</li> <li>• 내부평가 실적집계 가중치(+30%) 부여</li> </ul>
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비율 95% (vs. 평균 85% 수준)</li> <li>•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150억원으로 적용</li> <li>•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4~1/2로 확대 (vs. 1/6~1/3) ※ 5억원 이하는 한도사정 생략</li> </ul>
기술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비율 95% (vs. 평균 85% 수준)</li> <li>• 기업별 보증한도를 최고 200억원으로 적용 (vs. 100억원)</li> <li>• 3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한도를 추정 매출액의 1/2로 확대 (vs. 1/4~1/3) ※ 5억원 이하는 한도사정 생략</li> </ul>

- (비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해외판로 개척·박람회 참여 지원 및 맞춤형 컨설팅(세무·회계·인사·노무 등) 등 지원

\* 혁신 프리미어 전용세션 마련 등을 검토하고 전체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안내 예정

**< (예시) 정책금융기관별 주요 비금융지원 방안 >**

유형	개 요
민간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B NextRound) 스타트업-VC 연결을 위한 투자유치 플랫폼 (산은)</li> <li>• (U-CONNECT)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민간투자유치 플랫폼 (신보)</li> <li>• (핀테크워크) Reverse IR, 핀테크 스타트업 1:1 투자밋업 (성장금융)</li> <li>• (IBK창공 Plus)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 IR 개최(기은)</li> </ul>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BK 컨설팅) 중소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 (기은) * 분야 : 기업승계, 세무·회계, 경영, 인사·조직, 노무, ESG 등</li> <li>• (기술경영 컨설팅) 경영 및 기술현황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개선 (기보)</li> <li>• (기술 컨설팅) 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신보)</li> </ul>
스타트업 Fai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xtRise) 1:1 밋업, 부스전시 등 글로벌 스타트업 Fair (산은, 연 1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BK P@YGOS 서비스) 온라인 수출기업의 원활한 판매대금 정산 지원 서비스 (기은)</li> <li>• (해외진출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 용역비용(부가세 제외) 지원(수은)</li> </ul>

☞ [별첨3]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대상 비금융 지원 혜택(안)

- (지재처 특전사항) 혁신프리미어 선정기업은 투자용 IP가치평가지 평가비용 우대 5%p 추가 지원(선정 후 3년까지 우대)

## 4. 지원기간

○ 선정시 ~ 익년말(금번 선정시, '27년말까지 지원)

※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되더라도,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5. 선정요건

### □ 신청자격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중견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5대 중점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미래유망산업, 기존산업 사업재편·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속한 기업이 선정기업의 70% 이상이 되도록 선정예정

\*\*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는 '우수IP 보유기업'이 포함

구분	내 용	비고
기본요건	•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영위중인 <b>중소·중견기업</b>	필수
혁신성	• 최근 2년(2024.1.1.~)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7)에 해당하는 기관(한국벤처투자, 은행, 신·기보 등)	최소 1개이상 해당
성장성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2023~2025) 매출액, 상시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지재처 추천	• 지식재산처에서 다음 사업의 <b>지원을 받은 이력</b> 이 있는 기업 * 최근 3년(2023.1.1. 이후) 선정·지원받은 내역이 있는 기업에 한함 ① <b>지식재산 가치평가 지원사업</b> *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IP보증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IP담보대출 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② <b>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사업</b> *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IP-C&D 전략지원 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③ <b>IP거래 지원사업</b> * 국내 및 해외 지식재산 거래 지원, 민간 협력 거래기관 지정 ④ <b>글로벌 IP스타기업 사업</b>	

□ 지원제외 : 아래 결격사유 해당되는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주체	결격사유 점검항목
부처	①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②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 지원반	① 최근 1년 이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②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경우
	③ 최근 회계연도(2025년)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 의견인 경우 제외)
	④ 최근 회계연도(2025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⑤ 최근 회계연도상 3년(2023~2025) 평균 매출증감 $\Delta$ 10% 이상인 기업
	⑥ 최근 회계연도상 3년(2023~2025)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 단, ⑤·⑥에 해당하나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 → 이 경우 투자실적 증명을 위한 투자확인서, 주주명부 등 제출 필요

## 6. 선정방법

- (1단계-요건심사) 제출서류, 신청자격, 재무상태, '혁신성장 공동 기준' 부합여부 등 심사
- (2단계-서면평가) 보유기술 혁신성(지식재산권 역량, 연구개발 역량), 향후 성장 가능성 등 평가

### < 평가항목 및 배점(안) >

구분	평가항목	평가 고려사항	배점
보유 기술 혁신성 (50)	1) 지식재산권 역량	① 지식재산권 보유현황(국내·외 출원등록 현황) ② 지식재산권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③ 독보적 특허선진기술 확보(보유 혹은 미래 확보 기술의 독창성(모방 난이도), 제품화 시 시장지배력) ④ 향후 핵심특허·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30
	2) 연구개발 역량	① 기술개발조직 및 개발인력의 우수성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 현황	20

향후 성장 가능성 (50)	3) 기업 성장 추이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률 등의 증가 여부	20
	4) 최근 투자실적과 필요자원 및 역량확보방안의 적극성	① 최근 3년간 투자실적과 향후 투자 전략 ②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확보 계획의 치밀성 및 타당성 ③ 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 필요 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④ 자금 수요(대출, 보증, 투자) 및 시급성	15
	5) 핵심인재 확보 및 인재육성 적극성	① 최근 3년간 고용 현황 ②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③ 핵심인재의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5
<b>합계</b>			<b>100</b>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가능', 7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제외'로 분류.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순위에 따라 우선지원

## 7. 신청방법

### □ 신청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6. 4. 13(월). ~ 2026. 5. 8(금). 17시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p-premier@kipa.org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li> <li>*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함</li> <li>* 접수 후 1-2일 이내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 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02-3459-2935)</li> </ul>
서식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li> <li>-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kipo.go.kr),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li> </ul>
접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접수메일(ip-premier@kipa.org)로 송부</li> <li>* 혁신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li> <li>*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로 발송(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li> <li>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li> <li>③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li> <li>④ 제출서류는 비공개로 조건으로 '혁신프리미어1000' 관련 기관에만 공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li> <li>⑤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li> </ul>

### □ 제출 필요서류

구분	번호	제출서류	수량
공통 서류	①	혁신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 신청서	1부
	②	혁신성장전략서	1부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⑤	최근 3개년도('23~'25)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 제출	1부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명으로 출력)	1부
	⑦	신청기업 재무정보 작성양식(별첨4)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 8. 향후 일정

### □ 기업 선정 절차

- 공고(4~5월) → 결격심사(6월) → 기업 선정 평가(6월 말)  
→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확정 및 발표(7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 선정 후 지원신청 절차 (7월 이후)

- 선정 기업(통보 또는 공고예정)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금융·비금융 지원 신청서를 접수(수시)

\* 온라인(종합지원반 홈페이지: [www.newgi.org](http://www.newgi.org) 접속 → ‘혁신프리미어1000’ 클릭)  
오프라인(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 9. 기타 유의사항

-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금융지원(대출·보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정 후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른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금융지원 여부가 결정됨
- 선정절차 및 선정 후 금융·비금융지원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10. 문의처

- 기업선정관련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35, ip-premier@kipa.org)



## 혁신성장전략서

기업 개황(개별 기준)						
1)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기업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기업규모 _____ (단위 : 억원, 명)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가율(CAGR)	
	매출액					
	총자산					
	자본금					
	상시 종업원 수					
	매출 대비 수출비율(%)					
	<input type="checkbox"/> 주요 거래처 (23년기준)					
	거래처 명	○○○	○○○	○○○	기타	합
	매출 비중	%	%	%	%	100%
- 예) 삼성(30%), 소니(20%), 애플 (10%), 기타(40%)						
2)연구개발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매출액(A)				/	
	연구개발투자액(B)				/	
	연구개발투자비율(B/A)					
	<input type="checkbox"/> 특허보유건수(등록기준) : ( )건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황(√)					
	- 우수기술연구소(ATC 등) ( ), 일반연구소 ( ), 전담부서( )					
	<input type="checkbox"/> 연구인력 현황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상시 근로자수(A)						
연구개발인력(B)						
상시 종업원수(A+B)						
연구개발인력비중(B/(A+B))						
<input type="checkbox"/> 「혁신성장 공동기준」 영위 여부(별표.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품목 리스트」 참고)						
■ 테마 : _____ ■ 분야 : _____ ■ 품목 : _____						

3) 재무현황

매출구성 (단위 : 억원)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매 출 액(A)				
내 수				
수출	직수출(B)			
	기 타			
직수출 비중(B/A)				

※ 최근 3년간 직수출 증가율 : ( )%

신용평가등급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신용등급			

\* 신용평가기관 : ( )

영업이익률 (단위 : 억원)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매 출 액(A)			
영업이익(B)			
영업이익률(B/A)			

이자보상배율 (단위 : 억원)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영업이익(A)			
금융비용(B)			
이자보상배율(A/B)			

부채비율 (단위 : 억원, %)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부채(A)			
자기자본(B)			
부채비율(A/B)			

유동비율 (단위 : 억원, %)

연 도	2023년	2024년	2025년
유동부채(A)			
유동자산(B)			
유동비율(B/A)			

## 1) 기업규모(개별기준)

- 증가율은 최근 3년간 CAGR 값('22년말 대비 '25년말)
-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여러해 동안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으로 매년의 성장률을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한 값
  - : '23~'25년 3년간 연평균 성장률 =  $(2025\text{년도 성장률}/2023\text{년도 성장률})^{(1/2)} - 1$
- 주요거래처 : '23년 기준 매출 비중 상위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명과 매출 비중을 기재
  - \* 비율의 합은 100%가 되도록 작성하며 상위 3개 거래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

## 2) 연구개발 역량

- 우수기술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기술연구센터(ATC)등 정부 인증 우수연구소에 한함
-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해 신고한 조직에 한함
- 기술개발인력은 연구소 또는 전담조직에 속한 인력
- 상시근로자수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통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 「혁신성장 공동기준」 해당 품목 : '별첨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를 참고하여 적용 가능한 품목 작성(적용 가능한 품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일한 비중일 경우 택 1)

## 3) 재무현황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구분하여 작성
  -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 3년 평균 직수출증가율 =  $(19\text{년 직수출액}/17\text{년 직수출액})^{(1/2)} - 1$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및 신용평가기관 명기
  - \*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지 않은 경우, 국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평가신용등급 활용 가능
- 영업이익률(%) =  $\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이자보상배율 =  $\text{영업이익}/\text{금융비용}$
- 부채비율(%) =  $\text{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 유동비율(%) =  $\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혁신성장전략서

비 전

최종 목표

연도별 목표치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총 매출액

제  
품  
mix

○○제품

○○제품

○○제품

수  
출

직수출액

기타

세계시장점유율

인력 확보

### 기술확보 현황 및 향후 주요전략

- \* 현재 보유 기술의 우수성,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국내·외 출원·등록현황) 및 경쟁력(지재권 담당조직·인력, 독보적 기술 확보내용 등), 기술개발 인프라 현황, 향후 미래 기술 확보 계획, 인프라 확충 계획,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기대효과 등
- \* 반드시 혁신성장 공동기준 240개 품목과 연관지어 작성(별첨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 참고

\* 2페이지반 이내로 작성

## 혁신성장전략서

### 투자 현황 및 향후 주요전략

\* 최근 3년 투자 현황, 투자 여건 분석, 투자 로드맵, 투자 재원확보 방안, 기대효과 등

\*\* 「혁신프리미어 1000」 금융 지원 수요 시기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주요 투자 내역	연도별 투자금액 (단위 : 억원)			증가율(CAGR)
	2023	2024	2025	
총 투자액(A)				%
매출액(B)				%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A/B*100)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혁신성장전략서

### 경영혁신·고용 현황 및 향후 주요전략

\* 경영철학, 조직문화, 인력확보방안, 교육훈련, 투명경영, 조직성과관리, 기대효과 등

\*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혁신 프리미어 1000」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업명 :

□ 체크리스트(해당되는 부분에 √ 표기)

### I.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증빙파일	Y	N
공통 요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	-		
「혁신성장 공동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 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 보유	증빙서류 혹은 확인 공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상시 근로자 고용 연평균 20%이상 증가			
	IP분야에서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 보유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IP 가치평가 지원 * 지원년도, 지원사업 기재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IP보증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증빙서류 혹은 선정 공문		
	IP 사업화 지원 * 증빙서류 : 사업계약서 특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 IP-C&D 전략지원 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IP 거래지원 * 증빙서류 :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또는 중개확인서			
	글로벌 IP 스타기업 * 증빙서류 :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서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수혜) 증빙자료

*(증빙자료 스캔본 첨부 혹은 별도파일(PDF) 제출)*

## II. 지원제외

검 토 내 용	Y	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이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mp;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회계연도(2025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회계연(2025년)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회계연도상 3년(2023~2025년) 평균 매출증감 <math>\Delta</math>10% 이상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회계연도상 3년(2023~2025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li> </ul>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본 확인서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송부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가) 수집·이용에 관한 내용

수집·이용 목적

- 혁신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 기업 선정과 관련한 사무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신청기업의 담당자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 선택항목 : 없음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보유목적 달성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 선택항목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과제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평가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가)’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

### (다)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제공받는 제3자	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협의회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	---

한국발명진흥회 귀중

기업명:

담당자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